

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구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구직촉진수당 환수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“수취인 불명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01. 12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



-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 송달
- 근 거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박○수	1963.06.09.	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회수 처분사전통지서 (의견제출통지)	-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28조 -같은법 시행령 제12조 -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, 제18조, 제19조	○ 기지급된 3회차 구직촉진수당 83,330원 반환 결정 기지급된 4회차 구직촉진수당 500,000원 반환 결정	수취인 불명 전화수신거부	서울시 중랑구 중화1동 284-5 103호 (이하생략)

4. 공고기간 : 2024. 01. 12. ~ 2024. 02. 02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안상수(02-2077-342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